「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11. 16(목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11.. 26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2. 12. 20(목)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경제체육과장)

- ○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2조의2 근거 조항 재정비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2조의2(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신설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역서민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.
 -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근거 조항 재정비 함(안 제12조2)
 -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8시까지의 범위로 하다
 -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한다
 -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2012. 1.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 일부조문을 수정・신설하려는 개정조례안 임.
 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의 범위로 하였고
 -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로 규정하였음.
 - 본 조례안은 지역서민 상권보호를 위해 대규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「유통산업 발전법」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 - 【붙임】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